제 안 요 청 서

용 역 명	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연구
주관기관	국토교통부

2024. 2.

국 토 교 통 부 첨 단 물 류 과

목 차

I. 과업지시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Ⅱ. 제안요청내용 12
Ⅲ. 제안서 일반사항 13
1. 입찰 참가자격
2. 사업자 선정방식 14
3. 평가 및 협상기준 15
4. 제안서 서식 및 작성요령 15
5.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6
6. 제안서 설명 17
[별지 서식]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
I. 과업지시서

1. 과업의 개요

가. 과업명 :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연구

나. 과업의 배경 및 목적

- 화물관련 업계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는 한편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휴게 및 주차공간 등 휴게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
- 2003년 5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를 계기로 정부와 화물운송업 계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대 및 시설·서비스 개선에 합의
- 최근 화물자동차의 도로나 주택가 등 불법주차와 밤샘 주차로 교통 사고가 유발되고 있어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안전 보장이 필요
- o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, 원활한 화물 운송 도모 등을 위해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함
 - *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46조의2(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)
- 정부에서는 '05년「화물차 휴게소 확충계획」, '09년 「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중장기 확충계획('09~'14)」, '14년 「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종합계획('15~'19)」, '19년 「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('20~'24)」 네 차례에 걸쳐 화물차 휴게시설 계획을 수립
- o 이에,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'25년 ~ '29년 기간 동안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하고자 함
- 휴게시설 개발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하여 수요 기반의 휴게시설 공급과 개발체계 정립

- 지역별,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개발 방안 도출
- 원활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성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

다. 과업 범위

- 1) 시간적 범위
- 각종 통계 등 기초자료는 2023년 말 기준으로 활용하되,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
- o 중장기 확충계획의 경우 향후 5년을 기준으로 단기(5년 이내)와 중장기(5년 이후)로 구분하여 제시
- 2) 지역적 범위
- 이 기본적으로 국내를 대상으로 하되, 화물 물동량과 화물자동차 통행량이많이 유출입하거나 경유하는 지역 대상
- ㅇ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분석 대상에 포함
- 3) 내용적 범위
- ㅇ 기존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
- ㅇ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현황 및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
- ㅇ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
- o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연도별·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
- ㅇ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등

라. 과업 기간

-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'24.12.31까지로 하며, 다음과 같은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천재지변, 전쟁,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
-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
-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

마. 예산 : 80백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

○ 예산과목 : 물류산업지원 - 정책연구비(4034-309-260-02)

2. 과업의 내용

- 1) 기존 「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」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
 - ㅇ 기 수립된 「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」대비 추진실적
 - ㅇ 성과평가 및 추진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기존 계획과의 차별성 도출

2)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현황 및 화물 유발시설 분석

- ㅇ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
- ㅇ 화물자동차의 운행 및 통행실태 분석
- 품목별, 톤급별 화물자동차 운행특성, 근무여건 등 운행실태 분석
- 화물자동차의 도로이용(고속도로, 국도 등) 특성 분석

- ㅇ 국내 주요 물류시설 현황 및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
- 물류시설, 산업단지, 항만 등 화물 유발시설 현황 및 건설계획

3)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장래수요 예측

- 0 도로화물 물동량 현황 및 예측
- 주요 품목별 발생량 및 도착량 기준으로 대상지역 검토
- ㅇ 화물자동차 교통량 현황 및 예측
- 톤급별 교통량의 발생량 및 도착량 기준으로 대상지역 검토
- 고속도로, 국도 등 도로유형별 주요 도로의 화물자동차 교통량 분석

4)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계획적 공급 및 연도별·지역별 배치 계획

- ㅇ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개발 후보지역 선정
- 지자체 및 민간 휴게소 사업자 수요, 지역여건(휴게시설 실태분석, 화물차 운행특성) 등을 토대로 휴게시설 개발 후보지역 선정
- ㅇ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중장기 확충 방안 수립
-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중장기 확충 방안 수립, 단계별(단기, 중장기) 배치 방안 수립 및 투자 우선순위 제시
- 도로변(고속도로, 국도 등), 화물 유발시설 등에서의 화물자동차 휴게 시설의 중장기 확충 방안 수립

5)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 방안

- ㅇ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기능 개선 방안 마련
- 화물품목, 차종, 운행특성 등을 고려한 기능 개선 방안 마련
- ㅇ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

-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해외 제도·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
-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방향 설정
- ㅇ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
-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관련 법령 개정(안) 제시
-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개발·공급 활성화를 지자체 유인방안 검토, 재정 지원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

3. 과업수행지침

가. 일반사항

- ㅇ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
 및 과업일정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동 계획에
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, 과업수행자는 과업일정 계획에 의거 매 익월 5일까지 전월까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하며,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 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 중 연구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한다.
- o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,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.

- o 용역수행상의 인건비 및 경비는 계약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 하여야 한다.
- 과업시행과정에서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 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.
- o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발주처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.
- o 과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계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·운영하고, 과업수행 중에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.
-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사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하되, 발주기관이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·배포·개작·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(보안)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.

나. 세부사항

- 용역수행 중 연구내용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기관, 연구내용과 범위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용역수행 중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,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.
- o 연구진행에 대해 발주처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용역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·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- o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의유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.
-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문영문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,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를 하여야 한다.
- o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준공 시 전부 납품해야 하고, 성과품을 추가 인쇄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.

다. 설계변경 조건

- o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ㅇ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
- ㅇ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
- ㅇ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

라. 기타사항

- "직접인건비" 및 "제경비"는 실제 투입한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계약종료 10일전까지는 집행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.
- o 기타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되 조정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.

4. 보안대책

가. 본 업무수행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.

- o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업무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.
- 참여인원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고 정규직 외 참여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, 과업수행 중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신규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, 대외비,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, 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단, 비밀이 아닌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.
- 과업수행자는 진행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를 하여야 하며, 과실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필요시 참석자(또는 수령자)에게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.
- o 기타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성과품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)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 시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
- 2)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하고 원지, 폐지 등을 완전 회수 및 소각
- 3)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 금지
- o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.

- o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업무 성과품은 준공시 발주처에 전부 납품하여야 한다.
- o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) '누출금지 대상정보'를 누출하는 행위
- 2) '보안위반 처리기준'의 금지행위
-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, 인원,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, 관리적, 기술적 보안대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 하여야 한다.
-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, 그 밖의 사용인이 '누출금지 대상 정보'를 누출한 경우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, 형사상 책임을 진다.
- o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,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 하였을 경우 위반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.
-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,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.
- o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,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.
-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,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.

-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,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, 물품, 일자,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.
-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.
- o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.
- o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「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」, 「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」, 「국토교통부 보안 업무규칙」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5. 예정공정표

개월수 과업내용	비율 (%)	1	2	3	4	5	6	7	8	9	10
1. 기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의	10	5	5								
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2. 화물자동차 휴게시설		5	5	5							
현황 및 화물 유발시설 분석	15										
3.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장래수요 예측	30			10	10	10					
4. 제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						5	5	5	5		
계획적 공급 및 연도별·지역별 배치계획 5.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	20										
기능 개선 및 효율화 방안	15							5	5	5	•
6. 각종 회의 및 보고서	10	2				2				2	4
작성	10	착수 보고				중간 보고				최종 보고	
합 계(%)	100	12	10	15	10	17	5	10	10	7	4
누 계(%)	100	12	22	37	47	64	69	79	89	96	100

※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수급자와 협의하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

Ⅱ. 제안 요청내용

- 1. 기존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
 - ㅇ 기 수립된 「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종합계획」대비 추진실적
 - ㅇ 성과평가 및 추진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기존 계획과의 차별성 도출
- 2.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현황 및 화물 유발시설 분석
 - ㅇ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
 - ㅇ 화물자동차의 운행 및 통행실태 분석
 - 품목별, 톤급별 화물자동차 운행특성, 근무여건 등 운행실태 분석
 - 화물자동차의 도로이용(고속도로, 국도 등) 특성 분석
 - ㅇ 국내 주요 물류시설 현황 및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
 - 물류시설, 산업단지, 항만 등 화물 유발시설 현황 및 건설계획
- 3.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장래수요 예측
 - ㅇ 도로화물 물동량 현황 및 예측
 - 주요 품목별 발생량 및 도착량 기준으로 대상지역 검토
 - ㅇ 화물자동차 교통량 현황 및 예측
 - 톤급별 교통량의 발생량 및 도착량 기준으로 대상지역 검토
 - 고속도로, 국도 등 도로유형별 주요 도로의 화물자동차 교통량 분석
- 4.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계획적 공급 및 연도별·지역별 배치 계획
 - ㅇ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개발 후보지역 선정

- 지자체 및 민간 휴게소 사업자 수요, 지역여건(휴게시설 실태분석, 화물차 운행특성) 등을 토대로 휴게시설 개발 후보지역 선정
- ㅇ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중장기 확충 방안 수립
 -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중장기 확충 방안 수립, 단계별(단기, 중장기) 배치 방안 수립 및 투자 우선순위 제시
 - 도로변(고속도로, 국도 등), 화물 유발시설 등에서의 화물자동차 휴 게시설의 중장기 확충 방안 수립

5.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 방안

- ㅇ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기능 개선 방안 마련
 - 화물품목, 차종, 운행특성 등을 고려한 기능 개선 방안 마련
- ㅇ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
 -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해외 제도·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
 -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방향 설정
- ㅇ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
 -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관련 법령 개정(안) 제시
 -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개발·공급 활성화를 지자체 유인방안 검토, 재정지원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

Ⅲ. 제안서 일반사항

- 1. 입찰참가자격(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)
 - 1)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제27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 자격제한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 - 2)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2조(경쟁 입찰의 참가자격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(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) 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
 - 3)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(업종코드 : 1169)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
 - 4)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의2에 따라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,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(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)를 소지한 자(단,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),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므로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(이를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) 입찰 참가 가능
 - ※ <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>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,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(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,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)
 - ※ 공동수급(공동방식)을 허용하며,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, 「중소기업 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의2(단,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) 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

2. 사업자 선정방식 :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

가. 계약방법: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함

나. 낙찰자 결정 : 기술능력 평가(80%) + 입찰가격 평가(20%)

-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」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로 **협상적격자***를 선정한 후,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**입찰가격 평가점수를** 합산, 고득점 순에 따라 가격 협상
- *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(80점)의 85% 이상인 자

3. 평가 및 협상기준

가. 평가기준 및 방법

ㅇ 기술평가

구 분	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	평가방법				
제안기관 일반현황 (20)	기관평가 (20)	- 연구인력(석, 박사 등) 보유인력	20	계량평가				
	제안서 개 요	5	비계량 평 가					
과업수행 부 분 (80)	과 업 접근방법	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유사 연구용역과의 중복 및 병행 가능성 	30	"				
	과 업 수행계획	- 연구용역 추진일정·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	30	"				
	용역관리 및 사후관리	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(위험관리, 진도관리, 보안관리,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)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	5	"				
	연구조직 구 성	- 수행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절성	5	"				
	기 타 -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							
	계		100					

※ 계량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

ㅇ 관련 연구인력 보유수(20점)

연구인력 보유수								
구 분	10인 이상	8인 이상	6인 이상	4인 이상	4인 미만			
	102 03	10인 미만 8인 미만 6인 미만				4건 비단		
점 수	20.0	18.5	17.0	15.5	14.0			

* 물류, 교통, 도시, 경제 등 관련 전공 석·박사급 연구인력 보유수

※ 비계량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

			평가정도							
구 분		배점 (A)	매우우수 (점수=A×1)	우수 (점수=A×0.8)	보통 (점수=A×0.6)	다소 미흡 (점수=A×0.4)				
	제안서 개요	5	5	4	3	2	1			
	과업 접근방법	30	30	25	20	15	10			
과업수행	수행계획	30	30	25	20	15	10			
부 분	용역관리 및 사후관리	5	5	4	3	2	1			
_	연구조직 구성	5	5	4	3	2	1			
	기 타	5	5	4	3	2	1			

가격평가: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"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" 입 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

나. 협상방법

- ㅇ 협상대상자 선정
-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%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.
- 협상대상 순위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(기술평가점수+가격평 가점수)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

하여 낙찰자를 결정

*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, 기술평가 고득점순으로 하며,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한다.

ㅇ 협상절차 및 내용

-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 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.
-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, 이행일정,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,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.

4. 제안서 서식 및 작성 요령

가. 제안서 작성지침

- ㅇ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
- 제안서는 A4용지, 표지포함 20매 이내 아래한글로 작성하며, 반드시 나라장터(e-발주시스템)을 통하여 파일 제출
- o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 되도록 작성
-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
-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, 또한,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

항목에 "해당없음"으로 간략히 기술

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, 입증 요구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

나. 제안서 작성요령

ㅇ 제안서 구성

구 분	작 성 지 침	비고
1. 표 지	ㅇ 과업제안서	서식 제1호
2. 제안서 내용	이 제안서 개요이 과업접근방식, 과업수행계획,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, 연구조직 구성 등	-
	ㅇ 업체(기관) 일반현황	서식 제2호
3. 일반현황	o 관련 연구인력 보유현황	서식 제3호
	ㅇ 본 과업 참여 연구인력 현황	서식 제4호
	ㅇ 합의 각서	서식 제5호
4. 기 타	ㅇ 청렴계약서	서식 제6호
	ㅇ 보안서약서	서식 제7호
5. 별첨자료	ㅇ 증빙자료	

다. 제안 유의사항

- ㅇ 제안내용 보장
-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
-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,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.

다만, 발주기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
ㅇ 계약조건

- 제안사업자가 공동수급체(컨소시엄)를 구성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

ㅇ 제안서 효력

-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. 다만,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

ㅇ 제안비용부담

-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안과 관련한 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

ㅇ 제안서 설명

-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·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

ㅇ 저작권

-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자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, 제안서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국토 교통부는 이를 사용할 수 있음
-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타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, 타 저작권 침해 시 국토교통부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

ㅇ 기타 과업수행시 유의사항

- 제안요청한 내용의 추가·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연구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, 일부 변경할 수 있음

- 과업수행 중에는 국토교통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프로젝트 책임자(PM) 등 주요 용역수행인력을 변경할 수 있으며, 국토교통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 용역수행인력을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여야 함
- 제안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여·제공받거나,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자료는 본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국토교통부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음
- 용역수행자는 검수과정에서 발주자가 용역수행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하며, 보완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불량 부분으로 간주하여 전체 용역에서 차지하는 해당 불량부분의 비율에 따라 용역대가를 감액할 수 있음

라.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 연락처

ㅇ 제출서류 : 입찰공고문에 따름

o 제안 관련 문의 :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(044-201-4009, 4010)

○ 입찰·계약 관련 문의 :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(044-201-3186)

5.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

가. 제출서류 : 입찰공고문에 따름

나. 유의사항

- ㅇ 나라장터(e-발주시스템)을 통하여 파일 제출
-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
- 할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
- ㅇ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
-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제안요청서, 제안서,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과 업체가 협의하여 처리한다
-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,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, 물적,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
-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,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
- o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, 품질보증,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

다. 제출기한

o 제 출 처 : 나라장터(e-발주시스템)을 통하여 파일 제출

ㅇ 제출기한 : 공고문 참조

6. 제안서 설명

- 이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음(필요시 별도 통보)
- 제안 설명회 개최 시 제안서 설명은 PPT를 작성하되, 분량은 30페이지 이내로 함
-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신하며,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야함



과 업 제 안 서

용역명 :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 연구

기관명: (인)

제안업체(기관) 일반현황

1. 회사(기관)명			2. 대	표자	
3. 용역등록분야					
4. 주 소					
5. 전화번호					
6. 설립연도		년	월	일	
7. 주요연혁					
	2021년	2	2022년		2023년
8. 예산규모					
9. 상시 종업원수					
10.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					

<u>관련 연구인력 보유 현황</u>

분 야	성명	생년월일	직위	주요경력(관련분야)	학위 또는 자격사항

<서식 제4호>

본 과업 참여 연구인력 현황

분 야	성명	생년월일	직위	주요경력 (관련 분야)	학위 및 자격사항
책 임 연구원					
공 동 연구원					
연 구 보조원					
보조원					

- 주) 1.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.
 - 2.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.
 - 3. 박사학위 소지자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
 - ※ 필수제출서류 :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,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

<서식 제5호>

합의각서

입찰공고번호	C	입 결	할 일] 자	2024년	월	일
입 찰 건 명							

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,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,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.

2024년 월 일

공동수급체 대표자

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(인)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

공동수급체 구성원

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몇 (인)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

공동수급체 구성원

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(인)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

청렴계약서

당사는 「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」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, 국제적으로도 OECD 되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,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・설계・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, 당사의 임・직원과 대리인은,

- 1.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, 결의,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.
 -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.
 -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.
 -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, 아래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
 - 1. 입찰자: 입찰금액의 100분의5
 - 2. 계약상대자: 계약금액의 100분의10
- 2. 입찰·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·간접적으로

금품·향응 등(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)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.

- 이를 위반하여 입찰·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.
-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.
- 입찰·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참가하지 않겠습니다.
- 3.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.
 -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 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.
- 4. 입찰·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·향응 등(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)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, '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'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

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,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,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, 민·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- 5. 회사 임·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.
- 6. 본 건 입찰·계약체결·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, 서류열람,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- 7.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

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,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,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·형사상 어떠한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024. . .

서 약 자 : OOO회사 대표 OOO (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[별지 제16호 서식]

보 안 서 약 서

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 용역을

- 1.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.
- 2.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,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

년 월 일

소속 :

직위 :

성명: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